

##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

서천군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25.  
서천군 분임재무관

### 1. 견적에 부치는 사항

- 공사건명: 서천 비인읍성 수목정비공사
- 공사위치: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544-1 일원
- 공사개요: 수목정비공사 1식
- 공사기간: 착공일로부터 30일
- 추정금액: 20,000,000원 【도금액: 20,000,000원】
- 기초금액: 20,000,000원 【추정가격: 18,181,819원 + 부가세: 1,818,181원】
- ※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,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,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, 낙찰자가 비영리법인(면세사업자)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.

### 2.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

- 총액입찰, 전자입찰, 소액수의견적 입찰, 지역제한(충청남도) 대상 공사입니다.
-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.

### 3. 견적제출 참가자격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,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(조경업)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,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[신규사업자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,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)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]부터 견적서 제출일(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)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.
-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,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-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'조세포탈 등을 한 자'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업체의 상호(법인명칭) 및 대표자(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)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.

### 4.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

- 예정가격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“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”에 따라 책정하며, 표준품셈,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,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를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.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6%, 이윤은 14.9%입니다.

### 5.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

-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.
- 설계서 열람 장소: 서천군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(☎041-950-4764)

### 6. 견적서 제출

- 제출기간: 2026. 8. 25.(화) 10:00 ~ 2026. 9. 1.(화) 10:00

### 7. 개찰 및 낙찰자 결정

- 개찰일시: 2026. 9. 1.(화) 11:00
- ※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,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±3%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(2개씩 선택)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.
-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.
-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(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(이하 '국민연금보험료 등')의 합산액)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.745%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, 수의계약 배제(제한)사유 및 '9. 견적서 제출의 무효'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.
- A값(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): 850,597원
- ※ 예) 1순위 업체 견적서 제출 무효(부적격) 판정 → 2순위 업체 계약상대자 결정

## 8. 결과통보

-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와 열람으로 통보를 같음하며, 낙찰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
## 9. 견적서 제출의 무효

-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위반되는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.

## 10.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

-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**조정없이 반영**하여야 하며,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**사후정산**하여야 합니다.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**산업안전보건관리비**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**조정없이 반영**하여야 하며,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**사후정산**하여야 합니다.

(단위: 원)

| 국민건강보험료 | 국민연금보험료 | 노인장기요양보험료 | 산업안전보건관리비 | 퇴직공제부금비 | 안전관리비 | 품질관리비 | A값(합계)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
| 280,030 | 369,998 | 36,796    | 163,773   | -       | -     | -     | 850,597 |

## 11. 청렴서약서 제출

-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,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12. 하도급 관련 사항

-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「지방계약법시행령」에 따라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전기공사법」, 「정보통신공사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,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,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13. 기타 사항

- 입찰자는 지방계약법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,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, 설계서, 공사현장설명사항,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.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.

-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(☎1588-080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.

-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.

-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/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
- 퇴직공제부금비 / 산업안전보건관리비 / 품질관리비 / 환경보전비 / 안전관리비

- **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**

-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,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(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)를 사용하도록 하며,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제34조의4(발급면제)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.

-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(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)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,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. (\* 공정거래위원회홈>정보공개>표준계약서>표준약관양식>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)

- 행정안전부예규 『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』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**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”**가 적용됩니다.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.

-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(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)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(구분관리제)하여야 하고,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경부를 확인(지급확인제)합니다.

-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(하수급인 포함)는 매월 모든 근로자(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,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)의 노무비 청구서(청구내역서,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)를 공사감리(또는 공사감독관)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(사업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)

- 계약상대자(하수급인 포함)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(공휴일·토요일 제외)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결과(지급내역서)를 공사감리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(부가세제외)의 2.5%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.

- 발주처의 예산사정,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14.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

- 본 검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《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(법 제4조, 제9조) 》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-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.

15. 보증자료 제공처

- 공사에 관한 사항: 서천군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(☎041-950-4764)
- 입찰에 관한 사항: 서천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회계팀(☎041-950-4070)
-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(☎1588-0800)